- (1)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에 비하여 이를 실시하는 기관과 교육시간이 부족함.
- (2)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평생교육시설과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을 추가하고, 이러한 기관이 3월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 하는 경우에는 통일교육시간을 종전보다 2배 이상 확대하 도록 함.
- (3) 교육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. 통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다.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지침의 통보(영 제14조제3 항 신설)
  - (1) 다양한 통일교육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가 치과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.
  - (2)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이를 통 보하도록 함.
  - (3)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일교육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국 민의 여론을 통합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.

〈법제처 제공〉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변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노 무 현인 대 통 령

2005년 7 월27일

이 해 찬 국 무 총 리

국 무 위 원 법무부장관

대통령령 제18971호

변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

변호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변호사법시행령"을 "변호사법 시행령"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"변호사법"을 "「변호사법」"으로 한다. 제2조제3항ㆍ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"대법원장ㆍ검찰총장 및 대한 변호사협회"를 각각 "대한변호사협회"로 한다.

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법무법인설립인가 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의 정관변

경을 인가한 때에는 법무법인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, 이를 대한 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 법 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.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조의2(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등) 법 제5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(유한)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합계액은 법 제58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(이하 "자기자본"이라 한다)의 100분의 25(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)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13조의3(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) ①법 제58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(유한)은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(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)에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  - ②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 를 통하여 법무법인(유한)의 변호사 및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  - 1. 「출판 및 인쇄진흥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
  - 2. 「방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

- 제13조의4(보험 또는 공제기금에의 가입) ①법무법인(유한)은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8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.
  - ②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당 1억원 이상,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  - ③법무법인(유한)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잔여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, 잔여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1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④법무법인(유한)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.
  -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.
- 제13조의5(준용규정)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법무법인(유한)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- 제13조의6(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·열람) ①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법 제58조의21제2항 각 호에서

정한 서면을 제출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제목·제출자 및 제출일자를 기재한 후 제출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.

②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서면의 내용 중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 러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7(준용규정) 제9조·제10조·제12조·제13조·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규정은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.

제1조중 "변호사법"을 "「변호사법」"으로 하고, 제6조중 "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"을 "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"로, "형법"을 "「형법」"으로, "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"을 "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"로, "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"을 "「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」"로 하며, 제8조제1호나목중 "법원조직법"을 "「법원조직법」"으로하고, 동호다목중 "군사법원법"을 "「군사법원법」"으로하며, 동조제2호

가목중 "검찰청법"을 "「검찰청법」"으로 하고, 동호나목중 "경찰법"을 "「경찰법」"으로 하며, 동호다목중 "정부조직법"을 "「정부조직법」"으로. "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"를 "「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"로 하고, 동호라목중 "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 률"을 "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"로 하며, 동호마목중 "군사법원법"을 "「군사법원법」"으로 하고, 제11조제4 항중 "비송사건절차법"을 "「비송사건절차법」"으로 하며, 동조제5호 단서 중 "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"을 "「전자 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」"로 하고, 제12 조제1항중 "법원조직법"을 "「법원조직법」"으로 하며, 제13조제4호중 "상 법"을 "「상법」"으로 하고, 제18조제4항제1호중 "법원조직법"을 "「법원조 직법」"으로 하며, 제21조제1호 및 제2호중 "법원조직법"을 각각 "「법원 조직법」"으로 하고, 동조제4호중 "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"을 "「비영리민 간단체 지원법,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분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 행일부터 2년 이내에 주사무소가 같은 시·군·구에 있는 법무법인이 합병하여 법무법인(유한)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간은 제13조의5 및 제13조 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그 분사무소를 폐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제11호중 "법무법인"을 "법무법인·법무법인(유한)·법무조합"으로 한다.

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제2호가목중 단서중 "법무법인"을 "법무법인·법무법인(유한)·법무조합"으로 한다.

③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2항중 "법무법인"을 각각 "법무법인·법무법인(유한)·법무조합"으로 한다.

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3종제162호중 "법무법인"을 "법무법인·법무법인(유한)·법 무조합"으로 한다.

## ◇변호사법시행령 개정이유

「변호사법」의 개정(법률 제7357호, 2005. 1. 27. 공포, 2005. 7. 28. 시행)으로 법무법인(유한)과 법무조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무법인(유한)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또는 보증제한 한도를 정하고, 법무법인(유한)과 법무조합으로 하여금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며, 보혐 또는 공제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,

외국변호사에 대한 자격인가·자격인가 취소 및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인가 통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◇주요내용

- 가. 법무법인(유한)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등(영 제13조의2 신설)
  - (1) 법무법인(유한)의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 인에의 출자제한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비율을 제한 함 필요가 있음.

- (2) 다른 법인에의 출자와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의 합계 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고,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 함.
- (3) 출자 및 보증한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무법인(유한)의 자본건전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나. 법무법인(유한) 및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명시(영 제13조 의3 및 제13조의7 신설)
  - (1) 법무법인과 달리 구성원의 책임이 제한되는 법무법인(유한)과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명시하여 법률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.
  - (2) 사건수임계약서와 간행물·방송 등을 통한 광고물에 수임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.
  - (3) 법무법인(유한)과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.
- 다. 법무법인(유한) 및 법무조합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(영 제13조의4 및 제13조의7 신설)

- (1) 법무법인(유한) 및 법무조합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을 의무화하여 법률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.
- (2) 법무법인(유한) 및 법무조합은 설립 후 1월 이내에 보험이 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, 보험 또는 공제기금 보상한도액을 보상 청구당 1억원 이상, 연간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정함.
- (3) 법률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 게 되고,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위험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 됨.
- 라. 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·열람(영 제13조의6 신설)
  - (1) 법무법인이나 법무법인(유한)은 등기를 통하여 법률소비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나, 법무조합의 경우 법률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별다른 방법이 없음.
  - (2)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소속 법무조합의 규약 등 관련정보 를 제공받아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함.
  - (3) 법무조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소비자 들의 올바른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 〈법제처 제공〉